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60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5.

발 의 자:추경호·김용판·서일준

정운천・유경준・윤창현

정진석 · 이종배 · 임이자

유의동 · 김예지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분석·가공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장이 작성·관리하도록 하고,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회사무총장·국회도서관장·국회예산정책처장·국회입법 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기초자 료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의 장,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은 제한적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회의원, 「고등교육법」 상 대학의 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을 기초자료의 제공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(안 제85조의6제7항).

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6제7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4호) 중 "장"을 "장 및 이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"으로 한다.

- 1. 국회의원
- 5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원 격대학·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)의 장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5조의6제7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5조의6(통계자료의 작성 및	제85조의6(통계자료의 작성 및
공개 등) ① ~ ⑥ (생 략)	공개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
	<u>♥</u>)
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	⑦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	
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	
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	
성에 사용된 기초자료(이하	
"기초자료"라 한다)를 직접 분	
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	
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	
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	
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	
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	
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초자료	,
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	
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	
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	
여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<u>1. 국회의원</u>
<u>1.</u> ~ <u>3.</u> (생 략)	$2. \sim 4.$ (현행 제 1 호부터 제 3
	호까지와 같음)

/ 刈	서丶
≤ 41	(当 /

4. 그 밖에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<u>장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⑧ ~ ⑩ (생 략)

5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
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
대학 · 원격대학 · 기술대학
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)의
<u>장</u>
<u>6.</u>
장 및 이
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
장
⑧ ~ ⑩ (현행과 같음)